신청기관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에 관하여
–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김 잔 디
오사카대학교 고등사법연구과 초빙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01]이 제정되어,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중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선정한 문화재를 지정 보호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정책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선진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유·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서 충실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 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에 근거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유형문화재 중심의 보호 원칙으로 인해 무형문화재의 계승 가능성이 저해되어 보호의 범주가 협소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 보호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법률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더욱이 2003년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우리나라도 2005년 이에 가입하게 되어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요구에 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02]. 동법 제정으로 무형문화재의 보호 범위

01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 배경에는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산업화로 인해 소실될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원형유지를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4권, 2015, 51쪽 이하 참조.

02 최영화·민경선,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30쪽 이하.

확장을 포함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한 무형문화재 보호 상의 문제점이 다수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 한편, 법의 개정과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관련법 및 제도를 소개하여 무형문화재 보호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개요

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경제적 기반의 파괴는 일본 국보 소유자 등의 경제적 안정성의 상실로 이어져 국보 등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전쟁에 의한 국토의 파괴 등으로 국보건조물의 불법점거 등 문화재의 관리가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1949년 1월 26일 일본 호류지 금당 벽화가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문부성은 국보, 중요 미술품 등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부성은 문화재 보호와 관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참의원 및 참의원의 문부위원회에서는 국보 보존제도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국보보존법과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하여 문화재보존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어 1950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03].

2. 문화재보호법의 개요

제정 당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의 행정조직에 관한 부분과 보호의 행정작용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행정작용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보보호법, 중요미술품등의 보호에 관한 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승계했으며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유형, 범위는 구법의 유형문화재 등에 무형문화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04]. 동법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전하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

03 中野浩, 日本の史跡一保護の制度と行政, 名著刊行会, 2004, 29쪽 이하.
04 中野浩, 위의 책, 47쪽 이하.

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동법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해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표 1][05]과 같다.

[표 1]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내용

개정연도	주요 내용
1954	무형문화재에 관한 보호제도의 충실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제도의 충실 민속자료에 관한 보호제도의 충실
1968	문화청의 발족 문화재 보호 심의회의 설립
1975	매장문화재에 관한 제도의 정비 민속문화재의 보호제도의 충실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 제도의 창설 문화재 보존기술의 보호제도 창설
1996	문화재 등록제도 창설
	도도부현·지정도시 등에 대한 권한 위양 등 문화심의회의 개혁
2004	문화적 경관의 보호제도 창설 민속문화재의 보호범위 확대 문화재 등록제도의 확충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경관, 전통적건조물군의 6개 분야를 문화재로 정의하고, 이러한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유형·무형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서 국가가 지정·선정·등록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의 지정·선정·등록은 [그림 1]과 같이 문부과학대신이 문화심의회에 자문하고, 답신을 받아 행해지게 된다[06]. 지정 및 선정된 문화재는 현상 변경, 수리, 수출 등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며 문화청은 유형문화재의 보존수리, 방재, 무형문화재의 전승자 양성, 기록 작성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성 조치를

05 文化庁文化財部, "未来に伝えよう文化財－文化財行政のあらまし－", 2017, 3쪽 이하.
06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gaiyo/taikeizu_1.html, 최종검색일: 2018. 4. 3.

강구하고 있다[07]. 중요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높은 것을 국보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 특히 중요한 것을 특별사적, 특별명승,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토지에 매장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문화재의 보존·수리에 필요한 전통적인 기술을 문화재의 보존기술이라고 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08].

[그림 1] 문화재 지정·선정·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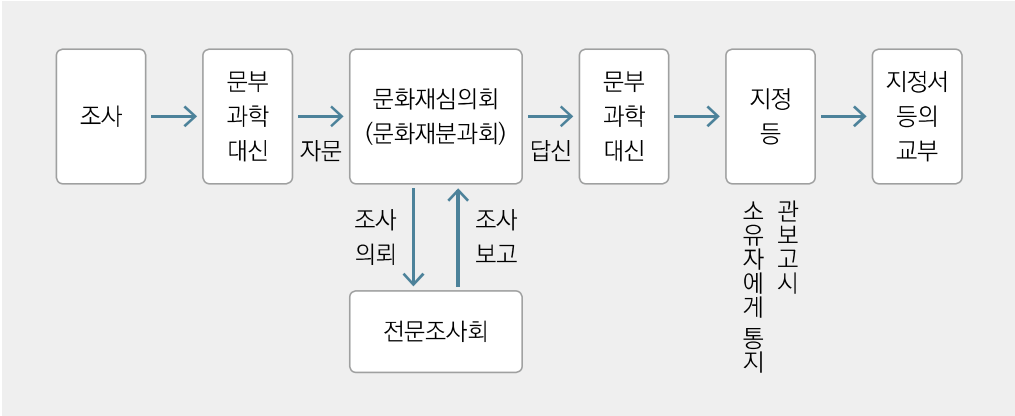

Ⅲ.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1. 무형문화재의 범위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재라 함은 인간의 기술(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술을 체현(体現) 및 체득(体得)한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의해 표현 된다[09]. 일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무형문화재에 관하여 '연극, 음악, 공예 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재산으로 일본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동조 제1항 제3호에서

07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bunkazai/sekaitokubetsu/01/sanko_4_1.html, 최종검색일: 2018. 4. 3.

08 文化庁文化財部, 앞의 논문, 2017, 2쪽 이하.

09 文化庁長官官房政策課, 平成29年我が国の文化政策, 2017, 44쪽.

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 물건으로 일본 국민의 생활 추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7조에서는 '문부과학 대신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으로 보존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 보존 기술로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 문화재의 범주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재, 무형의 민속 문화재 그리고 선정 보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0].

2.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의 역사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현재의 민속문화재는 민속자료라는 용어로 표기되었으며 민속자료 중 형체가 있는 것(유형)에 한하여 미술공예품이나 건조물과 함께 중요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민속자료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특별히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쇠멸할 우려가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재(資材)의 알선 기타 적당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 후 1954년 문화재보호법의 일부개정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쇠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부터 '쇠멸할 우려가 없는 것이라도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무형문화재의 폭넓은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동법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 동시에 해당 기술의 보지자(保持者)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었다.

1975년 동법 개정에서는 민속자료라는 명칭을 민속문화재로 변경하고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보존에 불가피한 전통적인 기술도 문화재의 보존기술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당시 일본산 옻의 생산기술이나 옻칠용 솔 등의 제작기술이 보존기술로 선정되었다. 선정보존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보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했으며 무형문화재 자체의 보존 뿐 아니라 기반이 되는 기술까지 광범위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4년 개정에서는 민속문화재의 새로운 분야로서 민속기술이 도입되어 민속문화재의

10 菊池健策, "日本の無形の文化財の保護制度", 国立文化財機構, 2010, 1쪽 이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무형문화재와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에 관한 의식주, 생업, 연중행사 등의 무형문화재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11].

3. 문화재 보호 시스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기술을 고도로 체현·체득한 자를 보지자 또는 보지단체[12]로 인정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기술의 승계를 도모하고 있다. 보지자 등의 인정에는 각개인정, 종합인정, 보지단체 인정의 3가지 방식이 있다. 각개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능 또는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현, 체득하고 있는 개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종합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능을 2명 이상의 자가 일체(一體)가 되어 체현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의 구성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지단체 인정의 방식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예기술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강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보지하고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이러한 자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어 있는 단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문화청 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그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민속문화재[13]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민속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 작성 등의 조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무형민속문화재로 선택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기술에 대해서는 보존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보존기술로 선정하고 선정함에 있어 선정보존기술의 보지자 또는 보존단체[14]를 인정하여 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11 菊池健策, “日本の無形の文化財の保護制度”, 平成22年無形文化遺産保護パートナーシッププログラム, 2011, 3쪽 이하.
12 무형문화재를 보지하는 자가 주요 구성원인 단체.
13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건수는 309건이다.
14 선정보존기술을 보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재단도 포함.

[표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건수(2018년 4월 1일 기준)[15]

	각개 인정		보지 단체 등 인정	
	지정 건수	보지자 수	지정 건수	보지단체 등 수
예능	39	57	14	14
공예 기술	38	57	16	16
합계	77	114	30	30

[표 3] 선정보존기술 현황

선정건수	보지자		보존단체	
70	건수	인수	건수	단체 수
	45	55	33	35

[그림 2] 문화재의 체계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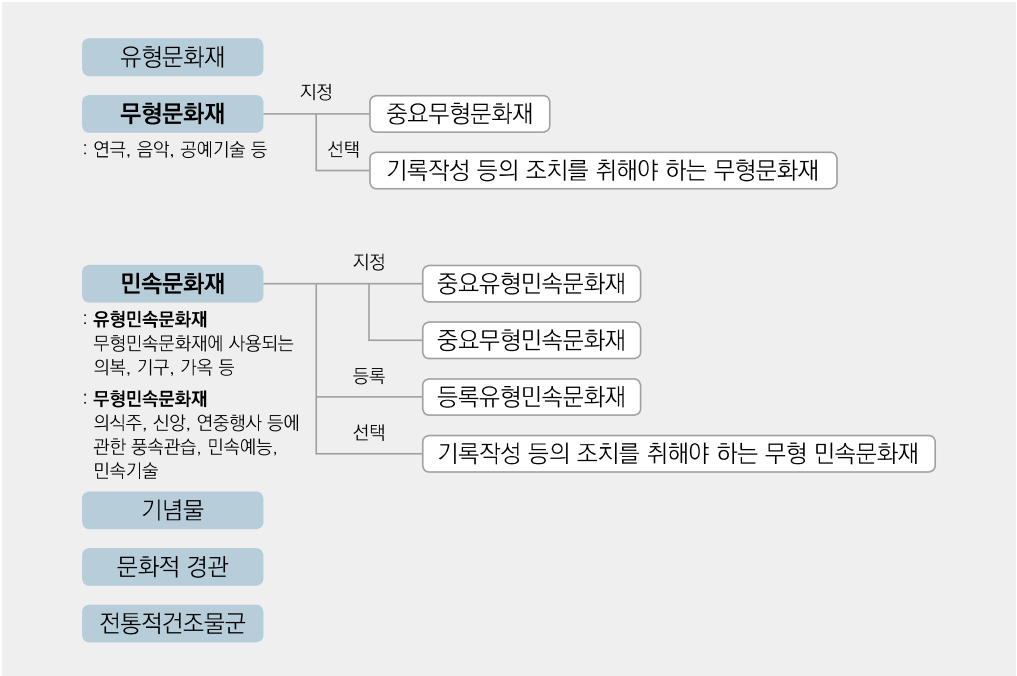

15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shitei.html, 최종검색일: 2018. 4. 3.

16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gaiyo/, 최종검색일: 2018. 4. 5.

문화재의 지정·선정 등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는 관계자를 현지로 파견하여 행하거나 학회 등의 동향,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 문화재로서 가치가 확인된 것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선정된 무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국가는 조성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각개인정의 보지자에 대해 특별조성금(연간 200만엔)을 교부하는 것 외에 보지 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전승자 양성사업, 공개사업 등에 관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공예기술 분야의 각개 인정보지자 및 보지 단체의 기술과 문화재를 지탱하는 기술에 관해서는 작품이나 관계자료 등을 공개하는 전람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기술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17].

또한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사업이나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시설 및 용구의 수리, 전승자 양성, 현지공개, 발표회, 영상기록의 작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매년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단체 등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지급된다.

선정보존기술에 관해서는 개인인정의 보지자에게는 매년 일정액이, 보존단체의 인정을 받은 단체에는 매년 보조금이 교부된다.

Ⅳ. 문화재 보호의 최신 동향

현재 일본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 기획조사회(이하 '조사회'로 표기)에서는 최근 사회현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방책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회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논의 현황 및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18].

17 文化庁長官官房政策課, 앞의 보고서, 2017, 44쪽.

18 이하 文化庁文化財部伝統文化課, "文化審議会文化財文化会企画調査会中間まとめの取りまとめ及び意見募集の実施について", 2017을 토대로 작성.

1.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문화재는 유형·무형의 다종다양한 문화적 소산이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위태로운 문화재가 존재하는 반면 사회 속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않으면 승계가 되지 않는 문화재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재의 종류·성질의 차이를 경시해서는 안 되며 문화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의 종류나 성질을 고려한 적절한 보존·활용의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고, 보존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재의 활용에 의해 사람들은 문화재의 매력이나 가치를 향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음 세대도 누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활용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수리·관리 등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승계에 불가피한 것이 지역주민의 존재이다. 문화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재의 승계를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문화재와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의 승계를 위한 방안

(1) 종합적인 관점을 토대로 지역 문화재의 보존·활용의 추진강화

1) 필요성과 대응 방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다종다양한 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 변화로 인한 문화재의 산일(散逸) 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 지정되지 않았던 문화재나 지정된 문화재와 일체가 되었던 주변 환경 등 귀중한 자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를 폭넓게 조사·파악하고 유형·무형에 관계없이 문화재나 그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계속적·계획적으로 보존·활용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 승계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나 도도부현의 대책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며 문화재나 소유자에 가장 근접한 행정 주체인 시정촌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소멸의 위험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활용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시정촌의 문화재 부국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인수의 직원이 전문성이 상이한 다종다양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는 교육·지역 부흥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 구체적인 방책

① 시정촌에 의한 기본계획의 책정

역사문화기본구상[19]을 '구상'에 그치지 않고 관계자가 파트너십을 맺어 구체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계획을 국가가 인정하는 등 일정한 관여를 하여 시정촌이 주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민간 추진 주체로서의 법인

문화재를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에 관한 다양한 보존·활용의 대책을 지속·확산시키는 것은 문화재 승계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적·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 문화재의 조사연구, 보존, 활용 등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민간과 공공이 지역의 목표를 공유하여 상호 보완하며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개개의 문화재의 보존·활용과 담당자의 확충

1) 필요성과 대응의 방향성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재의 문화재 지정·선정·등록과 수리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매우 유효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를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하여 검토해야한다.

2) 구체적인 방책

① 개개의 문화재 보존활용 계획의 작성

개개의 문화재에 대해 보호·활용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의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 작성을 장려하고 있는 '보존활용계획'의 작성을 더욱 강조

19 2007년 10월 30일 문화심의회 문화재 분과회 기획 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하였고, 현재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보존·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존활용계획의 작성을 법률상 명기하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를 제도상으로 명확히 하고 소유자 등의 주체적·계획적인 대책의 세울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② 문화재 보존·활용 담당자의 지정

문화재는 관리의 부담이 크고 소유자 등의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자금 및 인력 상의 문제로 충분한 관리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소유자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적 인재와의 연계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재 공개·활용을 위한 일원적 상담체제 구축

문화재 보존·활용의 양립을 위해서는 문화재 소유자, 관계기관 등의 상담을 일원적으로 받는 국가의 창구·센터가 불가피하다. 특히 전문가가 전국적으로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 활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문화재 관련 지식 등에 관하여 전문가가 일원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추진해야 할 시책

(1) 지방공공단체의 체제 충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담당직원 등의 인재확보 및 자질향상을 통한 지방공공단체의 추진체계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관광객 및 국제교류를 위한 대응

국제교류의 관점에서도 문화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역사 및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문화재의 매력을 이해시키고 문화재를 알기 쉽게 외국어로 설명하는 등 한명 한명의 흥미, 관심 등에 맞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3) 문화재 매력 발신 강화 및 선단기술과의 연계

문화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촉진하고 사회전

체가 문화재 보호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 매력을 발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시민의 참가촉진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문화재의 매력이나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의 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전하고, 역사·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매력을 알기 쉽게 발신하고 문화재와 사회를 잇는 문화유산 커뮤니케이터(가칭)의 육성이 필요하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토대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세하게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뿐 아니라 문화재 보존기술 중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및 선정보존기술에 상응하는 무형문화재 및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일부로 보호하고 있으나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 및 체제가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화재 보호는 경우에 따라서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문화재 보호는 인력, 재정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며, 이에 민간기관, 시민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조사회의 논의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동조사회의 논의 동향 및 법률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4권, 2015.

최영화·민경선,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외문헌

中野浩, 日本の史跡ー保護の制度と行政, 名著刊行会, 2004.

文化庁文化財部, “未来に伝えよう文化財ー文化財行政のあらましー”, 2017.

文化庁長官官房政策課, 平成29年我が国の文化政策, 2017.

文化庁文化財部伝統文化課, “文化審議会文化財文化会企画調査会中間まとめの取りまとめ及び意見募集の実施について”, 2017.

菊池健策, “日本の無形の文化財の保護制度”, 国立文化財機構, 2010.

————, “日本の無形の文化財の保護制度”, 平成22年無形文化遺産保護パートナーシッププログラム, 2011.